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850
----------	-------

발의연월일 : 2025. 6. 16.

발 의 자 : 안규백 · 장종태 · 황희
박지원 · 부승찬 · 황명선
이재관 · 차지호 · 소병훈
윤후덕 · 정성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은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재임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또 재임용된 장교 및 부사관은 재임용 후 12개월 경과 후부터 재임용 전·후 경력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장교 획득률이 극단적으로 저조한 데다 장기복무자 또한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는바 초급간부의 보직률이 매우 낮아 국가안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규정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 재임용 간부의 복무기간 합산을 12개월 이후부터 가능토록한 현 규정이 불합리·불필요한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예비역 간부가 전역 후 6년차까지 동원훈련을 통해 직무수행

역량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전역한 날로부터 6년까지 확대하여 간부 재임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복무기간 합산 제한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법률 제 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의2 중 “3년을”을 “6년을”로 한다.

제26조제6항 중 “부사관이 재임용된 날부터 진급심사일까지 12개월 이상 복무한”을 “부사관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장교의 임용)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 7. (생 략) 7의2.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전 역한 날부터 <u>3년을</u> 넘지 아니 한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 발된 사람 8. (생 략) ② (생 략)	제11조(장교의 임용)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 ----- <u>6년을</u> ----- -----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① ~ ⑤ (생 략) ⑥ 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에 따라 재임용된 장교나 <u>부사관이 재임용된 날</u> <u>부터 진급심사일까지 12개월</u> <u>이상 복무한</u> 경우에는 재임용 전후 해당 계급의 각 복무기간 을 더하여 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u>부사관의</u> ----- ----- ----- ----- ----- -----.